

# 韓國 國立大學 圖書館의 發展策에 관한 研究

崔 貞 泰\*

(차 례)

- |           |               |
|-----------|---------------|
| I. 緒 論    | Ⅲ. 發展策에 관한 構想 |
| Ⅱ. 現況과 課題 | Ⅳ. 結 論        |

## I. 緒 論

우리의 教育法에 의하면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하고 精微한 應用方法을 教授 研究하며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教育法 第8條)라고 記述하고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大學은 深奧한 學問을 研究하며 特 殊한 學問을 教授하도록 教育支援 施設을 設置하는데 그 中에서도 圖書館은 教育支援施設의 中樞的인 機關이라고 認定하는데 아무도 否定하지 못할것이다. 그것은 圖書館이 大學社會에 必要한 學術情報를 蒐集, 整理하여 組織的인 利用이 可能하도록 寄與하는데 必須不可欠한 存在일 뿐만 아니라 圖書館없이는 學問研究의 持續이 不可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이 지니는 內容이 곧 그 大學의 評價基準이 될 수 있으며 大學의 研究 및 教育의 成果를 올리는 核心要因이 된다. 이런 意味에서 圖書館이 「大學의 核」이라 일컬어 지기도 하고 或者는 「大學의 心臟」이라기도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大學圖書館이 社會的 與件으로 보나 行政的 位置로 보아 「附屬圖書館」이라는 이름하에 한 大學의 一個 末端附屬機關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總長 乃至 學長의 直屬機關이 아닌 教務

\* 서울大學校圖書館

処, 敎務課에 所属된<sup>1)</sup> 機構로써 指導業務를 받고 있는 實情에 있다.

대체로 大學圖書館은 機能上으로 보아 敎育的 機能과 奉仕的 機能으로 区分하는데 美國의 大學 및 研究圖書館協會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의 標準委員會 (Committee on Standard)에서 採択한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보면,

大學圖書館은 大學社會 속에서 가장 貴重한 知的資源이어야 한다. 適正數의 有能한 職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大學圖書館의 奉仕는 그 大學의 一般的인 事業計劃을 推進하며 同時에 그 大學의 特殊 敎育目的을 達成하도록 調整되어야 한다.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은 가장 豐富하게 東西洋의 遺産이 紹介되도록 겨냥하되 그 大學의 敎科課程을 中心으로 하여 特定分野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人爲的 障礙도 圖書館과 講義室을 또는 圖書館職員과 敎授를 隔離시켜서는 안된다.

大學圖書館은 授業計劃을 充分히 支援하는 외에 高度의 研究에 從事하는 古參敎授로부터 高等教育의 正門에 바로 들어선 新入生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大學의 모든 利用者들의 正當한 慾求를 充足시키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學生들에 對하여는 平生을 통한 讀書習性을 기르도록 刺戟하고 激勵하여야 하며 또 社會에서 그리고 大學生活를 벗어난 넓은 學問領域에서 大學圖書館의 固有의 役割을 다 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sup>2)</sup> 라고 力說하고 있다. 이와같이 重且大한 機能을 가진 大學圖書館이 現在 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固有의 役割을 遂行하지 못하고 있는대는

- 
- 1) 서울大學校設置令 第13條 ②項 및 國立學校設置令 第9條 ②項은 敎務課의 分掌事項으로 圖書館을 管理토록 하고 있다.
  - 2)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ommittee on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xx, No.14 (Jul. 1959), p.274  
柳東烈, 우리나라 大學圖書館行政에 關한 研究, 서울大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7) p.11 再引用

상당한 要因이 있다 하겠다. 이점에 대하여 이미 全圖書館人이 指摘하고 建議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成就나 反應效果가 別無하였다.

그런데 지난 여름 國務總理의 指示事項으로 文獻情報行政 (圖書館)의 改善을 위한 方針이 都下新聞에 發表되고<sup>3)</sup> 나서부터 지금까지 忘却되어 질번한 圖書館發展論이 다시 再照明되기 始作하였다.

여기에 대한 具體的인 指示內容으로는

- ① 全國 文獻情報流通網의 構成
- ② 國立中央圖書館의 指導機能強化 및 資料補強
- ③ 公共圖書館의 增設과 積極的 活動誘導
- ④ 서울大學圖書館의 先導的 機能賦與
- ⑤ 科學技術情報센터의 分室設置 온·라인 化
- ⑥ 圖書館 政策機能強化

등의 主題를 中心으로한 研究報告書가 나왔다.<sup>4)</sup> 本稿에서는 上記 6個 項의 카테고리중 第④項 「서울大學校 圖書館에 先導的 機能 賦與」에 대하여 特別히 關心을 가지고 이를 採択, 서울大學校를 中心으로 全國의 四年制 國立大學(校) 圖書館에 대한 諸般 現況을 調查, 分析檢討하고 이들이 當面하고 있는 懸案事項과 諸問題點 등을 探索하였다.

調查의 對象範圍는 서울大學校를 비롯한 國立綜合大學校와 單科大學이 現在 保有하고 있는 諸 財源에서 教授數, 學生數, 學科數, 圖書館職員數,

3) 東亞日報 1979.5.25. 1面, 京鄉新聞 1979.5.25. 7面, 朝鮮日報 1979.5.26. 社說, 한국일보 1979.5.27. 論評記事 등.

4) 國務總理室 行政改革委員會編, 文獻情報行政(圖書館)의 改善을 위한 研究報告書 (1979.4.26.) p. 1~43

5) ① 綜合大學校 8個: 서울, 江原, 慶北, 釜山, 全南, 全北, 忠南, 忠北大學校와, 單科大學 11個: 江陵, 慶尚, 公州師範, 群山, 馬山, 木浦, 釜山水產, 安東, 濟州, 韓國體育, 韓國海洋大學

② 國立大學중 教育 및 專門初級大學除外.

藏書數, 學術雜誌數, 圖書館豫算, 圖書館建物の 建坪數, 閱覽席 및 書庫收藏能力 등 施設物 事項을 對象으로 抽出하여 質問紙使用으로 調査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最新의 資料를 獲得하였다.

이 資料는 다시 大學의 名稱과 規模에 의거 3等級으로 分類하여 서울大學校는 A그룹, 7個綜合大學校를 B그룹, 11個 單科大學을 C그룹으로 区分하고 이를 美國과 日本의 大學圖書館事情과 比較함으로써 現在의 우리나라 國立大學圖書館의 位置를 살피고 우리가 處한 座標를 찾아 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國立大學圖書館이 沈滯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主要要因을 찾아 이를 除去 改善發展시키는데 있다.

## II. 現況과 課題

現在 우리나라 四年制 國立大學(校)은 지난해 까지 教育大學으로 있던 江陵, 群山, 馬山, 木浦, 安東大學이 4年制大學으로 昇格함으로써(국립학교설치령 제4차 개정, 1979.4.11. 대통령령 제9417호) 모두 19個校에 이른다.<表1> 이를 全國에 있어서 地域的 分布를 보면 서울에 2個校, 釜山에 3個校, 江原, 慶北, 全南, 全北, 忠南道에 各 2個校이고 忠北과 濟州道에 各各 1個大學씩 配置되어 있다. 가장 많은 國立大學(校)을 가지고 있는 地域은 釜山이고 가장 적은 校를 가진 道는 忠北과 濟州道이며 京畿道는 하나도 없다. 平均的으로 보면 各市·道마다 한 個씩의 綜合大學校와 單科大學을 가지고 있어 地域的 分布에 있어서는 대체로 均衡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細分하면 職員을 가장 많이 가진 곳은 서울의 175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濟州道の 8명이다. 藏書量에 있어서도 서울이 1百萬冊이 초과되는데 江原, 慶南, 忠北, 濟州道는 6萬餘冊에 不過하다. 그리고 閱覽席은 서울이 4千617席이나 釜山, 慶北, 全南, 全北道가 1千席을 넘었을 뿐이고 그외는 모두가 그 以下이다.<表2>

한편, 19個의 國立大學(校)은 全國의 4年制(初級, 教育, 專門大學除外)大學84個校<sup>6)</sup>에 대하여 23%에 해당하며 圖書館數로서는 全國 89

6) 文教部編 文教手帖(1979)에서 集計.

&lt;表1&gt;

國立大學(校)圖書

群	大學名	教授數	學生數			學科數			圖書館職員數			藏		
			學部	大學院	計	學部	大學院	計	正規	臨時	計	保有量	基準量	不足
A	서울大	1,164	14,211	4,106	18,317	91	91	182	88	85	173	1,041,559冊	1,325,700冊	284,1
B	江原大	166	4,790	95	4,885	40	11	51	10	7	17	54,134	255,000	200.8
	慶北大	552	11,901	924	12,825	53	81	134	21	25	46	233,522	392,100	158.5
	釜山大	420	10,390	1,049	11,439	53	60	113	22	19	41	203,547	452,100	248.5
	全南大	439	8,767	654	9,421	61	47	108	22	21	43	135,000	305,000	170.0
	全北大	315	8,080	794	8,874	52	52	104	21	17	38	114,400	260,000	145.0
	忠南大	283	7,460	812	8,272	46	28	74	14	13	27	90,394	370,000	279.0
	忠北大	179	5,000	84	5,084	38	20	58	11	14	25	63,000	150,000	87.0
	小計	2,354	56,388	4,412	60,800	343	299	642	121	116	237	893,997	2,184,200	1,290.0
C	江陵大	19	300	-	300	6	-	6	-	2	2	9,792	39,000	29.0
	慶尚大	163	4,263	52	4,315	30	6	36	5	11	16	42,851	150,000	107.0
	公州師大	82	2,200	-	2,200	17	-	17	4	5	9	36,471	66,000	29.0
	群山大	27	1,200	-	1,200	6	-	6	2	2	4	15,304	36,000	20.0
	馬山大	31	600	-	600	6	-	6	2	1	3	10,246	30,000	19.0
	木浦大	44	592	-	592	7	-	7	2	1	3	18,776	35,000	16.0
	水產大	65	2,160	94	2,254	12	6	18	4	7	11	36,687	65,040	28.0
	安東大	40	640	-	640	8	-	8	1	4	5	14,612	40,000	25.0
	濟州大	132	2,530	85	2,615	18	2	20	4	4	8	52,700	120,000	67.0
	體育大	20	480	-	480	1	-	1	1	1	2	1,000	20,000	19.0
	海洋大	69	1,600	40	1,640	2	2	4	6	1	7	28,042	58,000	29.0
小計	692	16,565	271	16,836	113	16	129	31	39	70	266,481	659,040	392.0	
合計	4,210	87,164	8,789	95,953	547	406	953	240	240	480	2,202,037	4,168,940	1,966.0	

種 誌		豫 算					施 設				
種	確 保 率	図 書 費	運 営 費	施 設 費	其 他	計	建 坪	閱 覧 席	基 準 席	確 保 率	収 蔵 能 力
910	%	千 円	千 円	千 円	千 円	千 円	坪	席	席	%	萬 冊
	501	286,837	146,237	-	17,014	450,088	9,244	4,417	2,747	160	150
255	58	43,966	5,510	5,490	110	55,076	992	414	732	56	50
265	208	68,010	19,421	-	34,560	121,991	1,489	930	1,923	48	24
240	244	91,700	13,562	-	-	105,262	1,318	1,263	1,715	74	22
305	220	60,000	90,036	-	-	150,036	1,950	1,089	1,413	77	20
260	235	74,000	47,964	-	-	121,964	2,040	1,490	1,331	112	20
370	102	72,716	3,534	-	5,756	82,006	495	414	1,255	33	7
180	87	50,505	6,510	9,183	800	66,998	1,075	850	762	112	10
1,875	165	460,897	186,537	14,673	41,226	703,333	9,359	6,450	9,131	71	153
30	100	1,360	-	-	-	1,360	165	92	45	204	2
150	89	52,200	6,540	3,000	203	61,943	500	402	647	62	3
85	62	15,355	2,097	370	-	17,822	620	450	330	136	12
30	30	3,900	-	-	-	3,900	289	188	180	104	2.5
30	83	4,000	-	-	-	4,000	150	150	90	167	1.5
14	107	3,998	-	-	246	4,244	250	136	88	155	2
60	140	13,892	6,147	-	-	20,039	392	150	338	44	4
40	50	4,060	-	-	-	4,060	368	160	96	167	3.57
120	79	27,800	946	-	-	28,746	200	220	392	56	6
5	800	10,000	-	5,000	-	15,000	175	200	72	278	3
20	440	10,500	3,998	3,000	200	17,698	1,000	348	246	141	4
584	101	147,065	19,728	11,370	649	178,812	4,109	2,496	2,524	99	43.57
3,369	245	894,799	352,502	26,043	58,889	1,332,233	22,712	13,363	14,402	93	346.57

<表2> 市, 道別 職員·藏書·閱覽席數 現況

市道別	種別	職 員	藏 書	閱 覽 席
서 울		175 人	1,042,559 冊	4,617 席
釜 山		59	268,276	1,761
江 原		19	63,926	506
慶 北		51	248,134	1,090
慶 南		19	53,097	552
全 南		46	153,776	1,225
全 北		42	129,704	1,678
忠 南		36	126,865	864
忠 北		25	63,000	850
濟 州		8	52,700	220
計		480	2,202,037	13,363

大學圖書館중 21%를 차지하여 私立大學圖書館數와의 構成比率은 1 : 4를 이룬다. 學生數에 있어서는 學部, 大學院生을 合하여 9萬 6千 餘名으로 全體 20萬 8千名 中에서 46%를 차지하여 私立大學 學生數 11萬 2千名 (54%)과 거의 對等해지고 있다. 圖書館職員數로는 國立大學이 480名으로 全體의 34%이고 私立大學의 約 切半이 된다. 藏書의 保有數는 220萬冊으로 全大學 藏書의 4分の1을 確保하고 있다. 그리고 圖書館施設物중 圖書館建坪數와 閱覽室座席數에 있어서 거의 藏書保有數에 比例하여 全體의 約 4分の1을 各各 차지하고 있다. <表3>

이러한 事實을 가지고 이웃 日本의 大學圖書館과 對照한다면 日本國立大學 82個校에 대하여 23%, 學生數 39萬 1千名에 대하여 25%, 圖書館職員

<表3> 國·私立別 大學圖書館 現況 比較

種別 設立区分	大 學 圖書館數 (%)	學生數 (%)	圖 書 館 職 員 數 (%)	藏 書 數 (%)	圖 書 館 建 坪 (%)	座 席 數 (%)
國 立	19 (21)	95,953 (46)	480 (34)	2,202,037 (26)	22,712 (24)	13,363 (28)
私 立	70 (79)	111,986 (54)	929 (66)	6,179,717 (74)	73,878 (76)	34,301 (72)
計	89	207,939	1,409	8,381,754	96,590	47,664

資料 : 1) 韓國圖書館協會編, 한국도서관통계 1979.12. (未發行 資料에서 拔萃)

2) 國立大學 (校) 圖書館現況 <表1>

3) 初級, 專門大學은 除外되었음.

數 2千 614名에 대하여 18%에 不適하다.<sup>7)</sup>

그리고 이를 美國의 大學圖書館과 比較하면 우리나라 國·私立 모두 합하여도 美國의 大學圖書館 3千 421個에 3%에 이르지 못하며 總藏書數로서는 美國의 4億 679萬冊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算術的 數値로써 圖書館의 落後性을 斷案내리기는 이르다. 그보다 더욱 切實한 것은 그 속에 內在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國立大學圖書館은 점점 增식되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大學의 使命이 곧 教育和 研究를 通하여 國家와 社會에 寄與함에 있다고 할 때 이 使命을 지닌 大學이 만족스럽게 發展하려면 막대한 研究施設과 研究를 위한 財政的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大學의 圖書館에는 이 經濟的 뒷받침이 不實하였다는 것이 大學圖書館 發展의 障礙要因의 그 첫째이다.

다음, 圖書館을 構成하는데 있어서 三大要素가 있는 바 우리는 이것을 職員, 藏書, 施設이라고 指稱한다. 이 세要素가 적절히 構成되어 있어야 훌륭한 圖書館이라고 일컬어 지는데 美國의 圖書館學者 히트(Heat)에 의하면 이 三大要素의 構成比率로서의 比重으로 보아 圖書館職員이 70%, 資料가 25%, 施設이 5%이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實証을 最近 國內에서도 圖書館界學者나 實務陣에서도 자주 論議<sup>10)</sup>하는 것으로 보아 圖書館員의 役割이 圖書館發展에 얼마나 重大한 것인가를 감안할 때 現在 大學圖書館의 人力構造에 큰 欠陷이 發見된다. 참다운 大學은 人的資源을 개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知識을 保存하고, 해석하고, 發展시키기 위하여 存在한다.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나은 人的資

7)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白書 1979, p. 23

8) Unesco, Statistical Year book 1977. p. 740

9) 高聖秀, 大學圖書館 職務分析에 關한 研究, 啓明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7) p. 36 再引用

10) 金世翊教授, 梁泰鎮, 嚴圭生, 高聖秀等 諸氏



源을 갈망하는 압도적인 요구는 그 요구 한가지만 하더라도 훌륭한 大學, 훌륭한 圖書館이 必要하다는 事實을 正当化시킴에 있어 다른 모든 要求를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다<sup>11)</sup> 고 하여 圖書館員의 要件을 제일로 잡고 있는데도 아직 韓國의 國立大學圖書館의 司書는 圖書館에서 主人 노릇을 못하고 下人노릇 하도록 配慮한 政策의 貧困이 圖書館發展의 두번째 저해要因이다.

적어도 이 두가지가 先行되지 않고서는 그 아무것도 解消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上記한 두가지 저해要因 즉, 經濟的, 政策的 側面에 立脚해서 圖書館의 職員, 藏書, 施設의 세要素를 中心으로 하여 展開코자 한다.

### 1. 職 員

圖書館의 職員(司書)은 그 業務의 特殊性과 難解度에 있어서 一般職의 職員과 區別되며 特히 文獻에 대하여 技術과 知識을 要하는 專門職으로서 그에 따른 特別한 教育과 訓練을 쌓아야만 本然의 使命을 다 할 수 있다. 그러기에 國家에서도 일지기 法으로써 司書의 資格要件을 두어 義務의 으로 配置하게 하였고(圖書館法 第6條) 美國에서도 이미 百年前인 1878年 부터 大學圖書館의 司書を 教授職에 接近시키는 表現이 있어왔으며<sup>12)</sup> 1967年 美國의 州立大學에 대한 한 調査에서는<sup>13)</sup> 州立大學 圖書館員의 3分の2, 즉, 63.4%가 “完全한 教授身分”을 가지고 있다고 報告되었다.

11) Gelfand, M.A. 大學圖書館,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李炳穆譯(韓國圖書館協會, 1972), p. 15~16

12) Robert, B. Down, "Status of Academic Librarian in Retrospect," *The Case for Faculty Status for Academic Libraries*, L.C. Branscomb, A.L.A. (1970) p. 113

13) Raj Madan and others "The Status of Librarians in Four-Year State College and Universit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ep. 1968) pp. 381~386, 崔貞泰譯「美國州立大學에 있어서 圖書館專門職員의 地位」*文獻情報學研究* v.1, n.3 (1978.9) pp. 27~35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大學의 機能上 專門職 司書가 必須的으로 要請되고 있으면서도 그의 任用에서는 公務員任用令의 適用을 받고 있기 때문에 大學圖書館學科의 석사학위를 所持한 者라도 5級 乃至 4級으로 甘受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大學圖書館의 司書職 配置基準을 보면 “大學과 大學校에는 學生數가 500人 以下인 때는 2人의 司書職員을 두며 學生數가 500人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800人마다 1人의 司書職員을 增置하도록” 하고 있다.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①項) 가령 本施行令 (1965.3.26.公布) 에 基準하여 15年前으로 소급하여도 現在 全國國立大學學生數 9萬5千9百명에 대하여 司書의 數는 4百명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19個 國立大學의 圖書館職員數는 480명인바 이 중 50%에 해당하는 240명은 臨時雜給職 또는 雇傭員이고 나머지 240名이 正規職일 뿐이다. <表1> 職員의 平均數에 있어서는 全体平均이 1館當 25名이 配置된 셈이고 A그룹인 서울대가 173명, B그룹인 綜合大學校가 34명, C그룹인 單科大學이 平均 7名의 圖書館職員이 配置되어 있다.

<表 4> 二 群別 圖書館職員數 및 圖書購入費 比較

種 別		群 別	全 体	A	B	C
圖書館 職員數	職 員 數 (人)		480	173	237	70
	職 員 平 均 數 (人)		25	173	34	7
	教授數/職員數 (人/人)		8.8	6.7	9.9	9.9
	學生數/職員數 (人/人)		199.9	105.9	256.6	240.5
圖 書 購 入 費	圖 書 費 (千圓)		894,799	286,837	460,897	147,065
	圖 書 費 平 均 (千圓)		47,094	286,837	65,842	13,369
	圖書費/教授數 (千圓/1人)		212.5	246.4	155.8	212.5
	圖書費/學生數 (千圓/1人)		9.3	15.7	7.6	8.7

여기서 가장 많은 職員을 가진 大學은 서울대가 173명이고 가장 적은 大學은 江陵大와 韓國體育大의 2名이다. 그나마 江陵大의 경우 모두가 臨時職이고 C그룹의 대부분 大學이 正規職보다 훨씬 많은 臨時職

員이 圖書館을 管理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큰 問題點을 안겨주고 있다.

가장 많은 職員數를 가진 서울大를 美國의 有數大學과 比較하면 順位로 보아 1위인 Harvard大 845명의 5分1이고 86位인 Brown大와 비슷하다. <表5>

그리고 圖書館職員을 教授數와 對比하여 보면 全體平均으로 教授 8.8명당 직원 1명이고, A그룹은 教授 6.7명, B그룹과 C그룹은 教授 9.9명당 직원 1명의 비율로 配置되어 있다.

한편, 學生數에 대하여 職員數를 견주어 보면 全體 平均은 學生 200名당 직원 1명이고 A그룹은 105명, B그룹은 256명, C그룹은 240명당 직원 1명씩으로 構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表4>

圖書館을 運營하는데 있어서 職員 못지않게 圖書館豫算이 먼저 대두된다. 運營費의 多寡에 따라 그 館의 規模를 알 수 있는바 여기서는 대개 圖書 購入費, 運營費, 施設費 등으로 区分되며 그 중에서도 圖書費는 순수한 資料 購入에 所要되는 費用으로 圖書館評價에 가장 重要視된다. 우리나라 國立 大學圖書館의 圖書費는 年平均 4千7百萬元인데 그중 서울大는 2億8千萬元, B그룹은 6千5百萬元, C그룹은 1千3百萬元에 이른다. 年豫算 1千3百萬元으로는 單行本 1千餘冊을 購入할 수 있는 豫算이고 學術雜誌 幾十種 밖에 確保할 수 없다. 가장 많은 서울大의 경우도 日本 東京大學의 圖書館 資料費 ¥10億6千621萬2千円<sup>14)</sup>(韓貨 約23億圓)에 8分の1밖에 되지않고 美國 Harvard大의 圖書費 \$3,708,737(韓貨 約18億圓)에 6分の1에 不過하며 全般的으로 보아 美國의 2流大學 水準에 未達한다.<sup>15)</sup>

그리고 圖書費에 대하여 全體大學의 平均値를 利用者數와 比較하면 教授 1人당 21萬2千5百圓씩 割當되고 學生 1人당 9千3百圓씩 配當되는 셈이다. <表4>

14) 東京大學圖書館, “1979年度 大學圖書館實態調査” 圖書館の窓(1979.10) p.118

15) ARL Statistics, 1976~1977,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1977) p.9 and 33.

## 美國 大學別 圖書館 職員 現況

&lt;表5&gt;

群	順位	大學名	圖書館職員數	群	順位	大學名	職員數
1	1	Harvard	845		49	Cincinnati	227
	2	Toronto	780		49	Boston	227
	3	Illinois	643		51	Joint University	226
	4	Yale	621		52	Syracuse	225
	5	Indiana	614		53	Tennessee	224
2	6	Calif., Berkeley	559		54	Kentucky	222
	7	Calif., Los Angeles	537		55	Johns Hopkins	220
3	8	Michigan	533		56	Massachusetts	219
	9	Columbia	512		57	Purdue	216
	10	Texas	506		58	McMaster	215
	11	Stanford	487		58	MIT	215
4	12	Washington	467	9	60	Howard	213
	13	Pennsylvania State	455		60	Washington, St. Louis	213
	14	British Columbia	450		62	Washington State	212
	15	Minnesota	446		63	Arizona State	210
5	16	Wisconsin	429		64	Iowa State	208
	17	Cornell	416		65	Connecticut	205
	18	Rutgers	406		66	Colorado	203
	19	Alberta	394		66	Utah	203
6	20	Ohio State	386		68	South Carolina	202
	21	McGill	366		69	Arizona	201
	22	Maryland	356		70	SUNY - Albany	198
	23	Princeton	353		70	Southern Illinois	198
	24	Pittsburgh	348		72	VPI	195
	25	Western Ontario	344		73	Miami	194
7	26	Northwestern	343		73	Nebraska	194
	27	Virginia	310		75	Georgetown	192
	28	Chicago	309		76	Case Western Reserve	191
	29	North Carolina	307		76	Oregon	191
	30	SUNY - Buffalo	300	10	78	SUNY - Stony Brook	189
	31	Pennsylvania	299		78	Notre Dame	189
	32	Houston	296		80	Missouri	187
	33	New York	291		81	Louisiana State	186
	34	Brigham Young	287		82	Florida State	185
8	35	Southern California	285		82	Texas A & M	185
	36	Michigan State	284		84	Oklahoma	179
	37	Calif., Davis	283		85	Rochester	178
	38	Duke	281		86	Brown	170
	39	Calif., Santa Barbara	264		86	Tulane	170
	40	Florida	262		88	Alabama	168
	41	Temple	255		89	Emory	167
	42	Kansas	248		90	Dartmouth	150
	43	Iowa	243		91	Kent State	142
	44	Georgia	242	11	92	Oklahoma State	129
	45	Queen's	239		93	Colorado State	116
9	46	Wayne State	235	12	94	Rice	97
	47	Calif., San Diego	230				
	48	Hawaii	228				

參考資料：ARL STATISTICS 1976-77,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1977)

2. 藏 書

圖書館이 大學의 心臟이라고 일컫는 所以然은 잘 整理된 情報資料를 蓄積해서 利用者로 하여금 쉽게 活用할 수 있도록 奉仕体制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學設置基準令에서는 “圖書館은 學生 1名에 대하여 30卷이상으로 하되 學科當 5千卷以上과 學術雜誌 5種以上을 備置토록” (第 11 條 ③項) 義務化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大學은 1969 年에 制定한 이 基準令에 符合시키기 위하여 汲汲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기에 達하는 大學은 하나도 없다. 基準令에 의하여 서울大가 1百4萬冊 (79%) 으로 가장 많고 韓國體育大學은 總藏書 1千冊 (5%) 으로 가장 적으며 全体가 平均 53%의 基準量 밖에 到達하지 못하고 있다. <表 1

今年度 19個大學의 平均 1館當 藏書數는 11萬5千冊 (表 6) 인바 이는 1970年度 美國大學 平均 52萬3千冊의 5分之1이고 1975年度 日本國立大學 平均 45萬8千冊의 4分之1에 不過하다. <表 7>

다시, 藏書를 教授數와 對比하여 보면 韓國의 경우 教授 1人當 523冊 美國은 1人當 1,089冊, 日本은 1人當 882冊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學生數 對比에 있어서는 韓國은 1人當 22冊, 美國은 58冊, 日本은 107冊으로 記錄되고 있다.

그 別 藏書數 및 學術雜誌數 比較

<表 6 >

種 別 \ 群 別		全 體	A	B	C
藏 書 數	總 藏 書 數 (冊)	2,202,037	1,041,559	893,997	266,481
	藏 書 數 平 均 (冊)	115,897	1,041,559	127,714	24,226
	藏 書 數 / 教 授 數 (冊 / 1人)	523.1	894.8	379.8	385.1
	藏 書 數 / 學 科 數 (冊 / 科)	2,310.6	5,722.9	1,392.5	2,065.7
	藏 書 數 / 學 生 數 (冊 / 1人)	22.9	56.9	14.7	15.8
學 術 雜 誌 數	雜 誌 總 數 (種)	8,247	4,555	3,100	592
	雜 誌 平 均 數 (種)	434	4,555	443	54
	雜 誌 數 / 教 授 數 (種 / 1人)	2.0	3.9	1.3	0.9
	雜 誌 數 / 學 科 數 (種 / 科)	8.7	26.0	4.8	4.6
	雜 誌 數 / 學 生 數 (種 / 1人)	0.09	0.25	0.05	0.04

여기서 한가지看過할 수 없는 것은 本 資料의 데이터 (data) 가 우리나라와 5年 내지 10年의 時差가 있는데도 우리의 藏書確保量은 너무 貧弱한 狀態에 놓여 있다. 所謂 「民族의 大學」이라는 서울大學校가 藏書 1百萬冊을 突破하였다고 자랑하지만 美國의 著名大學과 比較해 보면 Harvard大學 954萬冊의 9分之1, Yale大 688萬冊의 7分之1, 캘리포니아大學, Berkeley 캠퍼스 491萬冊의 5分之1에 不過할 뿐이며 美國에서 順位로 보아 89位인 뉴욕州立大學, Stony Brook 캠퍼스의 藏書數와 比 較된다. <表8>

그러면 學術雜誌에 대한 保有狀況은 어떤지 알아 보자.

프라이스 (de scolla price) 에 의하면 세계科學雜誌 增加 추세를 1800年에는 雜誌數가 약 100種 이었는데 1850년에는 1,000種으로, 1900년에는 10,000種으로, 1950년에는 100,000種으로 늘어 났다고<sup>16)</sup> 報告하고 있으며 현재 世界의 著名한 綜合目錄에 収録한 雜誌의 數는 Union List of Serials에 156,449種, British Union-Catalogue of Periodi-

<表7> 美國과 日本의 藏書數 및 學術雜誌數 比較

種 別		國 別	
		美 國 *	日 本 **
藏 書 數	藏 書 數 平 均 ( 冊 )	523,000	458,000
	藏 書 數 / 教 授 數 ( 冊 / 人 )	1,089	882
	藏 書 數 / 學 生 數 ( 冊 / 人 )	58	107
雜 誌 數	雜 誌 平 均 數 ( 種 )	5,570	7,050
	雜 誌 數 / 教 授 數 ( 種 / 人 )	11.6	12.8
	雜 誌 數 / 學 生 數 ( 種 / 人 )	0.6	1.6

資料: 栗原嘉一郎外, 米國大學圖書館의 藏書規模와 設置狀況, 大學圖書館研究 XII (1978.5) p. 45

註) \* 1970年度 美國의 現況

\*\* 1975年度 日本大學圖書館實態調查結果報告 중에서 國立大學만 採扱

美國 大學別 藏書 現況

<表 8 >

群	順位	大 学 名	藏 書 數	群	順位	大 学 名	藏 書 數
	1	Harvard	9,547,576		48	Rochester	1,653,000
	4	Yale	6,884,604		49	Kentucky	1,640,420
	5	Illinois	5,828,980		50	Case Western Reserve	1,591,921
					51	South Carolina	1,558,797
	4	Michigan	4,917,381		52	Brown	1,557,648
	4	Calif., Berkeley	4,917,330		53	Connecticut	1,557,201
	6	Columbia	4,730,492		54	Hawaii	1,540,943
	7	Indiana	4,399,020		55	Massachusetts	1,532,850
	8	Stanford	4,363,593		56	Southern Illinois	1,497,639
	9	Texas	4,053,715		57	Emory	1,450,219
					58	Temple	1,446,011
	10	Toronto	3,985,162		59	Brigham Young	1,409,549
	11	Cornell	3,979,581		60	Houston	1,405,277
	12	Calif., Los Angeles	3,908,053		61	Calif., Davis	1,391,780
	13	Chicago	3,886,130		62	Joint University	1,370,999
	14	Minnesota	3,363,576		63	Oklahoma	1,359,509
	15	Ohio State	3,257,759		64	Oregon	1,343,738
	16	Wisconsin	3,238,152		65	Tennessee	1,332,784
	17	Washington	3,236,944		66	Nebraska	1,318,883
					67	Notre Dame	1,311,432
	18	Princeton	2,910,461		68	Arizona State	1,285,688
	19	Duke	2,869,558		69	Tulane	1,274,151
	20	Pennsylvania	2,784,260		70	Purdue	1,265,156
	21	Northwestern	2,594,777		71	Queen's	1,244,891
	22	New York	2,501,672		72	Dartmouth	1,240,695
	23	Michigan State	2,325,795	9	73	Calif., Santa Barbara	1,235,458
	24	British Columbia	2,316,998		74	Maryland	1,231,540
	25	North Carolina	2,274,173		75	Cincinnati	1,229,547
	26	Pittsburgh	2,174,868		76	Calif., San Diego	1,224,796
	27	Virginia	2,143,226		77	Boston	1,223,969
	28	Johns Hopkins	2,101,525		78	Miami	1,214,773
	29	Iowa	2,055,581		79	Florida State	1,211,874
					80	Kent State	1,189,377
	30	Rutgers	1,995,278		81	Oklahoma State	1,185,828
	31	Kansas	1,962,539		82	Iowa State	1,180,951
	32	Pennsylvania State	1,957,276		83	Western Ontario	1,157,361
	33	Arizona	1,955,196		84	Alabama	1,131,594
	34	Missouri	1,882,394		85	Texas A & M	1,107,989
	35	Florida	1,852,841		86	Washington State	1,092,099
	36	Alberta	1,807,800		87	Colorado State	1,084,730
	37	McGill	1,807,154		88	Georgetown	1,082,222
	38	Southern California	1,792,782		89	SUNY-Stony Brook	1,071,791
	39	Georgia	1,719,178		90	VPI	1,000,708
	40	Utah	1,718,273				
	41	Colorado	1,717,369	10	91	Rice	954,237
	42	Wayne State	1,704,848		92	Howard	952,219
	43	Syracuse	1,678,402		93	SUNY - Albany	930,168
	44	SUNY - Buffalo	1,673,463		94	McMaster	906,741
	45	MIT	1,669,840				
	46	Washington, St. Louis	1,665,274				
	47	Louisiana State	1,659,549				

參考資料: ARL Statistics 1976-77,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 1977)

## 美國 大學別 學術雜誌 現況

&lt;表9&gt;

群	順位	大學名	學術雜誌數	群	Rank	大學名	學術雜誌數
1	1	Calif., Berkeley	97,199		46	Kent State	19,127
	2	Harvard	97,000		47	New York	18,712
2	3	Illinois	85,558		48	MIT	18,311
					48	Missouri	18,282
3	None				50	Southern Illinois	18,205
					51	Utah	17,927
4	4	Yale	60,886		52	Calif. Santa Barbara	17,716
					53	Purdue	17,615
4	5	Texas	60,000		54	Houston	17,004
					55	Florida	16,981
	6	Columbia	57,617		56	SUNY - Buffalo	16,793
					56	Louisiana State	16,779
5	7	Calif., Los Angeles	56,345		58	Iowa State	16,357
					59	McGill	16,281
	8	Stanford	53,075		60	Arizona	16,087
					61	Georgetown	15,854
	9	Cornell	51,995		61	Maryland	15,847
					63	South Carolina	15,490
	10	Michigan	47,906		64	Johns Hopkins	15,423
					64	Emory	15,406
	11	Wisconsin	47,831		66	Dartmouth	15,359
					66	Texas A & M	15,332
6	12	Chicago	43,854		66	Colorado State	15,328
					69	Alberta	15,039
	13	Indiana	42,523		70	Queen's	14,927
					70	SUNY - Albany	14,897
	14	Toronto	41,462		72	Washington, St. Louis	14,779
					73	Joint University	14,672
	15	Washington	40,813	9	74	Oklahoma	13,921
					74	Massachusetts	13,892
	16	Calif., Davis	39,105		76	Arizona State	13,836
					76	Case Western Reserve	13,823
	17	Minnesota	36,828		78	Temple	13,257
					79	Wayne State	13,022
7	18	Duke	33,263		80	Florida State	12,646
					81	Brown	12,512
	19	Pennsylvania State	32,830		82	SUNY - Stony Brook	12,455
					83	Alabama	12,287
	20	Princeton	31,104		84	Notre Dame	12,082
					85	Rochester	12,000
	21	Georgia	29,924		86	Western Ontario	11,698
					87	Miami	10,768
	22	Ohio State	28,788		88	McMaster	10,107
					89	Cincinnati	9,915
	23	Hawaii	27,806		90	Oklahoma State	9,907
					91	Tulane	9,651
	24	Pennsylvania	27,439		92	Colorado	9,250
					93	Rice	8,278
	24	Northwestern	27,403		94	Howard	7,303
					94	Howard	7,303
	26	Kansas	25,829				
	27	Washington State	25,361				
	28	North Carolina	25,269				
	29	Calif., San Diego	24,850				
	30	Kentucky	24,591				
8	31	Iowa	24,299				
	32	Michigan State	23,452				
	33	Connecticut	23,110				
	34	Rutgers	22,770				
	35	Pittsburgh	21,872				
	36	Tennessee	20,922				
	37	Boston	20,768				
	37	Oregon	20,722				
	39	Syracuse	20,641				
	40	Nebraska	20,136				
	41	Virginia	19,943				
9	42	Brigham Young	19,670				
	43	VPI	19,555				
	43	British Columbia	19,532				
	45	Southern California	19,233				

參考資料：ARL Statistics 1976-77,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 1977)



cals에 140,000種, World List of Scientific Periodicals에 60,000種으로 記載되었다.<sup>17)</sup> 이렇게 많은 學術雜誌중에서 世界的 名門大學은 저마다 많은 主題의 學術雜誌를 確保하고 있다. 美國에서 가장 많은 種數를 確保하고 있는 大學은 Berkeley大와 Harvard大가 9萬7千種이고 Yale大가 6萬種, 94位 序列을 가진 Howard大가 7千3百種으로 <表9> 서울大의 受贈購入 모두 합친 4千5百種의 近倍數에 接近한다.

그리고 韓國의 大學別 平均 雜誌確保數가 434種인데 反하여 <表6> 美國大學의 平均數는 韓國의 13倍인 5千570種을 確保하고 있고, 日本國立大學은 16倍인 7千50種을 保有하고 있다. <表7>

다시, 雜誌數를 教授 및 學生數에 對比하여 보면 韓國은 教授 1人당 2種, 學生 1人당 0.09種인데 反하여, 美國의 경우는 教授 1人당 11.6種, 學生 1人당 0.6種이며, 日本은 教授 1人당 12.8種, 學生 1人당 1.6種을 各各 確保하고 있어 教授나 學生數의 對比에 있어 너무나 甚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前述한 바와같이, 藏書數를 大學設置基準令에 의하여 計上한 경우 상당한 不足量이 表出되었다. 그러나 學術雜誌의 경우는 大學設置基準令이 例示하는 (學科當 5種以上 備置) 基準值 보다 훨씬 上廻하고 있음이 이번 調查에서 發見되었다. <表6> 즉, 大學全體는 學科當 平均 8.7種을 確保하였고, A그룹은 25種으로 基準值의 5倍나 되며, B, C 그룹은 學科當 4.8, 4.6種을 確保하여 基準值에 到達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모든 圖書館事情이 基準值에 훨씬 未達하고 있는데 唯獨 學術雜誌의 경우에서는 基準量을 上廻하고 있다는 것은 基準令의 標準設定에 欠陷이 있음이 分明하다. 例컨대 學問의 系列을 무시하고 무조건 「學科當 5種씩」 劃一的으로 規定할 수 있을까? 가령 學生數 1千名을 지닌 醫學科나 法學科에도 5種으로 滿足할 수 있을지의 疑問이 提起되어 진다.

### 3. 施 設

大學圖書館의 機能이 아무리 落後되고 設令 書店보다 못한 圖書館 일

17) 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 ヘンドブック, 日本図書館協会 (1977) p. 376

지라도 蓄積된 藏書를 收藏할 書庫와 教授나 學生이 直接 利用할 閱覽 席이 必須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도 大學設置基準令이 있어서 “大學圖書館에 ① 閱覽室, 定期刊物室, 書庫, 事務室을 갖추도록 하고 ② 閱覽室에는 學生定員의 1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座席을 設置할 것”(第11條)을 規定하고 있다.

現在 全國立大學 總藏書가 220萬 2千冊인데 圖書館의 總建坪數는 2萬 2千 712坪이 되어 1坪當 97冊을 保有하고 있다. 가장 큰 圖書館은 서울大의 9千 244坪이고 가장 작은 圖書館은 150坪을 가진 馬山大學이다. <表1> 全體의 平均 建坪數는 1千 195坪이며, A그룹의 서울大를 除外하고 B그룹인 國立綜合大學校가 1千 337坪에 不過하고, C그룹인 單科大學은 延建坪이 尙 373坪 밖에 되지 않는다. <表10> 그나마 상당수의 C그룹 圖書館은 獨立建物を 確保하지 못하고 大學本部로 부터 더부살이를 하고 있음이 이번 調查에서 確認되었다.

또한, 圖書館建坪에 대하여 教授 1人當 5.4坪을 차지하게 되고 學生으로는 1人當 0.2坪씩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Unesco가 公共圖書館部會에 合議된 學生 1人當 閱覽室의 面積을 計算한 24平方尺<sup>18)</sup>에도 훨씬 未達하고 있다.

한편, 閱覽座席數에 있어서는 全大學이 1萬 3千 363席으로 全學生 9萬 5千 953名으로 學生 7人當 座席 1個씩 配當되어서 全體學生의 14%를 차지한다. 이 構成比率은 大學設置基準令 15%에 대하여 1%가 未達하는 것이지만 15%의 基準策定 自体가 絕對不足한 狀況이어서 最近에 와서 많은 國·私立大學이 圖書館을 新築 또는 增築하는 現象을 보아도 實感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學生數의 24%를 確保하고 있는 서울大도 試驗때만 되면 매우 混雜한 狀態임에 비추어 閱覽席은 더욱 더 擴張하여야 할 것이다.

18) 金基泰, 大學圖書館發展을 위한 改善策, 도서관 v.34, n.2 (1979.3) p. 13

<表 10>                   그 書別 圖書館建坪 및 閱覽席數 比較

種 別		群 別		全 體	A	B	C
		全 體	群 別				
圖 書 館	建 物 坪 數 ( 坪 )	22,712		9,244	9,359	4,109	
	平均建坪數 ( 坪 )	1,195		9,244	1,337	373	
建 坪	坪數/教授數 ( 坪/1人)	5.4		7.9	4.0	5.9	
	坪數/學生數 ( 坪/1人)	0.2		0.5	0.2	0.2	
閱 覽	座 席 數 ( 席 )	13,363		4,417	6,450	2,496	
	平均座席數 ( 席 )	703		4,417	921	227	
座 席 數	席數/教授數 ( 席/1人)	3.2		3.8	2.7	3.6	
	席數/學生數 ( 席/1人)	0.14		0.24	0.10	0.15	

### Ⅲ. 發展策에 대한 構想

前 Harvard大學 中央圖書館 (Widener Library) 長인 마틴 (Louis E. Martin) 氏가 1972年 서울大學校圖書館을 診斷한 그의 報告書<sup>19)</sup>에서 현재의 國立서울大學校圖書館이 한심한 條件에 놓여있음을 지적하고 도서관의 전반적인 組織과 專門司書의 地位등에 주의깊은 심사를 要하며 圖書館이 大學의 研究나 授業을 위해 能動的이고 動的인 奉仕를 遂行할 수 있도록 반드시 큰 變化가 있어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指摘事項은 비단 서울大學校만 指稱하였다기 보다 全國立大學圖書館이 모두 該當하는 事項이라고 생각한다.

本稿에서는 이와같은 傳統的이고 消極的인 從來의 圖書館觀을 脫皮하기 위하여 主로 前項의 實態調查에서 發見된 現況을 中心으로 問題點을 도출하되 그 改善策을 「圖書館法」등 國會에서 審議하여야 할 法律事項은 一但 制限하고 「令」「規定」에 範圍를 局限하여 다음과 같이 改善方案을 提示코자 한다.

#### 1. 文獻研究職의 新設

##### 가. 現 況

學術文獻의 研究機能이 主로 되어 있는 大學圖書館員이 司書職으로 되어 行政職群속에 包含되어 있고 最上位職級이 3級乙類로 되어있다.

19) Louis E. Martin, *The Librar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atement on Management*, (Washington D.C. 1972) pp. 29

### 나. 問題点

司書職의 專門性이 認定되지 않고 그 昇進의 길이 막혀 있어 離職率이 增大되고 士氣가 매우 低下되어 業務의 效率性을 期待할 수 없으며 教授 및 學生에 대한 奉仕가 不實하여 研究 및 勉學雰圍氣 造成에 隘路가 적지 아니하다.

### 다. 改善方案

大學圖書館에 專門職要員을 確保하기 위하여 最上位職級을 2級乙類로 하는 文獻研究職을 新設 配置하여 專門的 性格을 가진 文獻情報資料의 調查 研究에 從事케 한다.

### 라. 改正하여야 할 法規

- ① 공무원임용령 별표 1
-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0조 및 별표 1, 2, 3
- ③ 공무원임용시행규칙 별표 2
- ④ 공무원승진을 위한 평정규정 별표 3
- ⑤ 국립학교설치령 제 13조
- ⑥ 서울대학교설치령 제 17조
- ⑦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 2. 圖書館의 職制改編

### 가. 現 況

서울대학교圖書館의 職制는 4課1室(收書, 整理, 閱覽, 參考書誌課, 奎章閣管理室)로 되어있고(서울대학교設置令 第17條) 地方大學校에서는 2課(收書, 閱覽課)뿐이며(國立學校設置令 第13條) 單科大學에서는 職制가 없을 뿐 더러 專門職의 定員配定마저 없다.(國立學校設置令 第3章)

### 나. 問題点

서울대학교는 龐大한 藏書와 組織 및 人員에 비추어 各課業務의 調整등 圖書館運營이 有機的으로 遂行되지 못하고 있으며, 地方大學은 2課뿐으로서 圖書館의 基本業務인 整理業務(Cataloging and Classification)가

事務分掌에서 누락되어 圖書館 固有業務를 遂行키 어려우며, 特히 單科大學은 職制도, 專門職의 定員配定도 없어 業務의 效率性을 期하기 困難하다.

#### 다. 改善方案

서울大學校圖書館은 行政室을 新設하여 各課 業務調整은 勿論 京鄕의 他大學圖書館에 까지 協調體制를 갖는 機能을 構築하도록 하며, 地方大學校는 3課(庶務, 司書, 閱覽課)로 改編 司書課에서 整理業務를 担当하도록 하고 庶務課는 오직 一般行政業務만 遂行토록 한다. 그리고 單科大學은 職制를 設置한 後, 專門職의 定員을 配定한다.

#### 라. 改正하여야 할 法規

- ① 서울대학교설치령 제 17 조
- ② 국립학교설치령 제 13 조
- ③ 국립학교설치령 제 장 대학 중 1항 신설

### 3. 教育研究職 確保

#### 가. 現 況

大學圖書館의 業務機能上 調查研究를 위한 專担要員이 不在하다.

#### 나. 問題點

外國, 學術情報의 調查研究가 不振하며 國學資料의 啓發等 調查研究의 機能이 極히 微弱함.

#### 다. 改善方案

教育研究官 및 教育研究士를 두어 學術文獻의 調查와 國學資料의 啓發에 따른 業務를 研究케 한다.

- ①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4. 圖書館 臨時職의 陽性化

#### 가. 現 況

19個 國立大學圖書館의 總職員 480名중 臨時職員이 240名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表1>

## 나. 問題点

責任感, 所屬感이 없고 士氣가 低下되어 離職率이 極甚하며 業務가 滯  
貨되어 能率性이 없다.

## 다. 改善方案

상당수의 臨時職員을 正規職公務員으로 陽性化한다.

## 라. 改正하여야 할 法規

- ①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5. 圖書館 行政의 自律性 確保

## 가. 現 況

大學本部 敎務課의 事務分掌事項중 圖書館의 管理에 관한 事項이 規定되  
어 있다. (注: 1 參照)

## 나. 問題点

高度로 專門化되어 가는 司書業務를 法規上으로 만, 敎務課의 所管에 專  
屬시킴은 實際에 있어서 有名無實하며 業務의 能率化를 저해하는 結果를  
招來케 한다.

## 다. 改善方案

人事, 豫算, 經理, 財産管理(圖書館資料除外) 등 重要業務는 現行方式대  
로 따르되 圖書館資料의 蒐集, 整理, 保存 및 活用등 순수한 圖書館 固有  
業務는 그 能率을 增進시키기 위해 圖書館이 單獨으로 處理할 수 있도록  
明文으로 그 權限을 委任토록 한다.

## 라. 改正하여야 할 法規

- ① 국립학교설치령 제 9 조 ②항  
② 서울대학교설치령 제 13 조 ②항

등에서 “도서관” 삭제

## 6. 雜給職員 規程의 改正

## 가. 現 況

國家公務員法중 雜給職員規程(1975.9.25. 대통령령 제 7265 호)에서

「司書要員」이 「庁舎管理人夫」에 準하는 「5種」으로 되어있다. (雜給職員의 種別区分表 別表 1)

나. 問題点

圖書館의 司書要員이 管理人夫와 同格으로 賤待받고 있다.

다. 改善方案

「司書要員」을 通訳員, 編輯員, 速記士, 이·디·피·에스 프로그래머와 同格인 「2種」으로 昇格시킨다.

라. 改正하여야 할 法規

① 잡급직원규정 별표 1

7. 大學設置基準令(圖書 및 學術雜誌) 改正

가. 現 況

大學設置基準令에 圖書는 學生 1人당 30卷以上으로 하되 學科當 5千卷以上으로 하고 學術雜誌는 5種以上을 備置토록 하고 있다 (第 11條 ③項)

나. 問題点

基準令에 明示된것으로는 到底히 學問研究에 不實해 질 수 밖에 없다.

다. 改善方案

圖書에 對해서는 아직도 各 大學(校)이 基準에 未達하고 있으니 論外로 하고 學術雜誌에 對하여는 學問의 系列에 따라 적어도 人文科學은 20種以上, 社會科學은 30種以上, 自然科學은 50種以上으로 大幅 增加한다.

라. 改正하여야 할 法規

① 대학설치 기준령 제 11 조

8. 大學設置基準令(施設) 改正

가. 現 況

基準令에 의하면 圖書館內에 ① 閱覽室, 定期刊行物室, 書庫, 事務室을 갖추도록 하고 ② 閱覽室에 學生定員의 1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閱

覽席을 設置토록 하고 있다 (第 11 條)

나. 問題點

大學圖書館의 機能上 上記 4 個室로서는 絶對不足하며 더 많은 用途의 室이 必要하다. 또한 現在 尙當수의 單科大學이 獨立된 圖書館建物を 가지 못하고 한 建物の 一部를 借用하여 使用하고 있으며 自体建물이 있는 圖書館도 施設狀態가 너무나 貧弱하여 利用者에게 甚한 不便을 주고 있다. 이것은 大學設置基準令에 圖書館施設 事項중 閱覽室의 座席數에 대해서만 規定되어 있고 其外必要한 事項에 대하여는 明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改善方案

圖書館에 갖추어야 할 各室이 明示된 4 室以外에 「參考資料室」「指定圖書室」或은 「課題圖書室」「視聽覺資料室」「複寫室」등이 具備되어야 하고, 먼저 各室의 面積에 對한 最底基準率을 策定한 다음 閱覽席은 現在 「學生定員 15 % 以上」을 「學生定員 30 % 以上」으로 擴大시킨다.

라. 改正하여야 할 法規

① 大學설치기준령 제 11 조

## 9. 圖書館豫算 大幅增額 및 圖書費 項目 設定

가. 現 況

圖書館으로 割當되는 豫算이 教授나 學生數에 있어서 先進諸國에 比하면 너무나 隔差가 甚하며 大學全體豫算에서 配定되는 比率이 極小하다. 뿐만 아니라 地方의 單科大學에서는 圖書費에 對한 項目이 設定되어 있지 않았다.

나. 問題點

圖書館豫算의 欠乏으로 因하여 効率的인 奉仕를 期하기 어렵고 圖書館資料의 補充時 計劃的인 藏書構成에 支障을 招來케 하며 窮極的으로 圖書館發展의 큰 障礙요인이 된다.

다. 改善方案



圖書館豫算을 大幅的으로 增額措置하되 圖書費編成時 大學全体 豫算에서 몇 %를 義務的으로 割當을 한다던지 教授 1人當 또는 學生 1人當 配當金額을 算定하여 豫算編成토록 한다. 그리고 圖書費의 項目 未設定 大學에 대해서는 반드시 豫算項目에 挿入한다.

라. 改正하여야 할 法規

① 예산회계법

10. 文敎部職制에 圖書館 專担部署 設置

가. 現 況

文敎部內에 圖書館行政을 專担할 機構가 없다.

나. 問題點

圖書館의 懸案事項이나 建議事項을 當局에 提出할 경우 이를 審議할 專担部署가 없어 提出한 案件이 死藏될 確率이 많으며 体系的인 圖書館行政에 空白을 가져오고 있다.

다. 改善方案

文敎部職制內에 圖書館局 乃至 圖書館課를 新設한다.

라. 改正하여야 할 法規

① 문교부직제 제 2조 및 제 3조

11. 서울대학교 圖書館에 先導的 機能 賦與

가. 現 況

서울大圖書館은 國內에서 가장 豊富한 學術研究資料를 保有하고 있음에도 制度의 未備로 國內 他大學間의 書誌情報交換이나 資料의 共同活用이 안되며 組織人力등 行政體制의 微弱으로 能動的이며 質이 높은 圖書館奉仕를 못하고 있다. (國務總理指示 1979.4.26)

나. 問題點

制度上 機能이 賦與되지 않아 自体 教職員 및 學生에 대한 奉仕에 그칠뿐 京鄕各地의 모든 大學圖書館 相互間의 書誌情報交換, 相互貸借, 複寫提供 등의 協力關係가 이루어지지 않고 資料의 広域的인 活用이 不可

能하다.<sup>20)</sup>

다. 改善方案

全国 各大学 (校) 図書館에 대한 先導的인 役割을 할 수 있는 機能을 賦与하고 奉仕의 質을 높이기 위한 專門要員 (教育研究官 및 教育研究士) 의 確保와 副理事官, 文献研究官 (2乙상당) 을 長으로 하는 「行政室」을 新設하여 서울大図書館內의 各課業務調整은 물론 全国大学図書館과의 協調業務를 担当할 機能을 強化한다.<sup>21)</sup>

라. 改正하여야 할 法規

- ① 서울대학교설치령 제 17 조
- ②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12. 서울대학교校內에 「文献情報學碩士課程」 또는 「文献情報學研究所」 新設

가. 現 況

文献情報學 (Information Science) 의 研究体系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國內의 大学院課程에서 獨立學科가 없으며 先進諸國의 先例에 비추어 마땅히 서울대학교가 말아야 할것을 渴望하고 있는 狀態이다.

나. 問題點

專門職 図書館要員의 確保가 困難하며 文献情報行政의 後進性을 脱皮하지 못하고 있다. (國務總理指示 報道資料)

다. 改善方案

서울대학교大学院 또는 特殊大学院 (行政大学院, 環境大学院, 保健大学院) 중 1個 大学院內에 碩士學位課程을 新設하도록 하고, 不然이면 서울大図書館內에 研究所를 設置하여 常任研究員을 配置하고 專門司書要員을 養成할 1年間의 研修課程을 設置한다.

20) 行政改革委員會, 前掲書, p. 23

21) 前掲書, p. 28, 31.

라. 改正하여야 할 法規

- ① 서울대학교설치령중 별표 1~2
- ② " 제 6조 및 제 17조
- ③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IV. 結 論

한나라의 文化·教育水準을 評價할 때 그나라 圖書館의 實態 즉, 人的 構的, 藏書數, 設備등을 가지고 直接 比較評價하기는 어려울 지 몰라도 그것을 가름하는 하나의 尺度로서는 充分하다 하겠다. 前項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現在 우리나라 國立大學圖書館의 財源 및 施設등을 他國의 大學과 比較해 볼때 그 水準과 規模에서 상당히 落後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왜 이와같이 大學圖書館이 固有의 本分을 發揮치 못하고 또 後進性を 脫皮치 못하고 있을까 이번 調查에서 實態를 分析한 結果, 圖書館發展의 主要因이 複合的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社會나 大學이 大學圖書館에 대한 認識이 稀薄하여 政策當局者로 부터 疎外된채 圖書館政策의 不在가 으뜸으로 表出되었다. 그리하여 組織과 職制가 매우 不實하여 圖書館員의 士氣가 極히 低下되고 離職率이 深化하여 效率의인 奉仕에 적지않은 支障을 惹起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圖書館豫算에 대해서도 極히 不足하고 一部大學에서는 圖書費가 項目으로 設定되지 않아 流動的으로 圖書館이 運營되고 있으며, 施設 또한 微弱하여 狹小하고 不便한 環境속에 處해 있는것이 오늘의 國立大學圖書館의 實情인 것이다.

다행히 1979.4.26. 國務總理의 特別指示로 圖書館은 다시 沈滯의 늪에서 소생하는 機會를 갖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發展策을 構想하게 되고 또한 指示事項에서 미처 提起치 못한 懸案事項을 發掘하여 새로운 構想案을 摸索해 보고 上述한 12個項에 대하여 現實性에 비추어 이를 다시 要約 提示코자 한다.

〈첫째〉 文献研究職의 新設; 大学図書館의 特殊性에 비추어 適正課程의 學問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 Academic Status를 賦与한다.

〈둘째〉 図書館의 職制改編: 서울대학교図書館에 「行政室」을 新設하며, 地方대학교図書館에서는 現職制중 「収書課」를 「司書課」로 改称하고 「庶務課」를 新設하여 一般行政業務를 担当케 한다. 그리고 単科大学에서는 職制를 設置한 後 專門職의 定員을 配定한다.

〈셋째〉 教育研究職의 確保: 學術文献의 調査研究를 專担할 教育研究官과 教育研究士를 配置하되 資格要件을 두어 반드시 図書館專門職이어야 하도록 한다.

〈네째〉 図書館臨時職의 陽性化: 現在의 臨時職 全部를 陽性化하자는 것이 아니고 現臨時職의 50%程度를 陽性化한다.

〈다섯째〉 図書館行政의 自律性 確保: 教務課의 事務分掌事項중 「도서관」을 삭제한다.

〈여섯째〉 雜給職員規程의 改正: 司書要員의 職能을 不知한 所致이므로 「5種」에서 「2種」으로 移記한다.

〈일곱째〉 大学設置基準令(図書館 및 學術雜誌)의 改正: 図書館에 대한 基準은 論外로 하고 우선 學術雜誌基準을 學問分野別로 大幅 增加한다.

〈여덟째〉 大学設置基準令(施設)의 改正: 図書館의 各室을 多樣化하게 設置하고 各室의 面積에 대해서는 最低基準率을 策定하며 閱覽席에 있어서도 學生 定員의 30%以上으로 擴大시킨다.

〈아홉째〉 図書館豫算 大幅增額 및 図書館費項目 設定: 図書館豫算을 大幅增額시키고 大学の 教授數 및 學生數에 比例해서 豫算編成指針을 作成하여 施行하며 一部 図書館費項目 未設定 大学은 반드시 豫算項目에 挿入시킨다.

〈열째〉 文教部職制에 図書館專担部署의 設置: 美国이나 日本의 경우처럼 図書館을 專担하는 行政部署를 設置하여 下意上達이 有機的으로 伝達되도록 한다.

〈열한번째〉 서울대학교圖書館에 先導的 機能賦与: 国立大学뿐 만 아니라 私立大学에 까지 情報活用을 위한 相互協力体制을 갖도록 하는 制度的 装置가 必要하며 이런 役割을 担当할 組織으로 서울대학교圖書館에 「行政室」을 新設하고 專門職要員을 確保한다.

〈마지막〉 서울대학교校內에 「文献情報學碩士課程」 또는 「文献情報學研究所」의 新設: 時代的 副応에 맞추어 碩士學位課程을 新設하되 서울大의 「國民倫理教育學科」처럼 (學部課程은 없지만 大學院課程만 있다) 一般大學院에 設置하던지 特殊大學院인 경우 「行政大學院」內에 設置함이 妥當하고, 學科의 新設이 不可할 경우 圖書館內에 研究所를 두어 常任研究員을 配置하고 一年課程의 高級司書의 養成을 위한 講議와 現場教育을 實施한다.

#### 參 考 文 獻

- 1) 行政改革委員會. 文献情報行政의 改善을 爲한 研究報告書. (1979.4.26.)
- 2) 金永植外. 우리나라 綜合大學校 運營改善의 方案. 學술조성연구조사보고서 (사회과학계) (1972.5)
- 3) 李崇寧外. 大學院教育의 強化策研究. 서울대학교大學院 (1971)
- 4) \_\_\_\_\_ . 大學院 教育運營 改善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大學院, (1972)
- 5) 韓祐衍. 서울대학교 綜合化에 따른 大學院 強化策研究報告. 서울대학교大學院, (1976)
- 6) 李漢彬. 「國家發展과 近代化를 爲한 大學의 長期計劃」, 서울대학교行政大學院, 行政論叢, v.6, n.2 (1968) pp. 1~22
- 7) 李宇永. 「國立大學運營의 問題點과 改善案」, 教育研究, v.7, n.4~5 (1974. 4~5) pp. 18~22, 24~26
- 8) 金字鎬. 「大學의 改革方向과 地方大學의 現實」, 江原大 雪嶽, v.3 (1972) pp. 154~160
- 9) 趙文寅外. 「地方大學으로서의 濟州大學의 高等教育改革에 關한 研究」, 濟州大學論文集 v.7 (1975) pp. 137~160

- 10) 柳東烈. 우리나라 大学圖書館行政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行政大学院 碩士學位論文, 1977)
- 11) 李応善. 大学圖書館經營의 合理化方案에 관한 研究, (延世대학교教育大学院 碩士學位論文, 1973)
- 12) 高聖秀. 大学圖書館職務分析에 관한 研究, (啓明대학교教育大学院 碩士學位論文, 1977)
- 13) 金基泰. 圖書館行政에 관한 法規側面에서의 研究, (서울대학교教育大学院 碩士學位論文, 1970)
- 14) 金鍾鼓. 우리나라 圖書館의 發展策, (建國대학교行政大学院 碩士學位論文, 1969)
- 15) 李丙穆, 「大学圖書館을 위한 基準」, 도협월보, v.18, n.15 (1977.6) pp.3~18.
- 16) \_\_\_\_\_, 「대학교圖書館을 위한 基準」, 도협월보, v.19, n.9 (1978.11) pp.8~19.
- 17) 李萬甲. 圖書館과 國家發展, 第23回 讀書週間記念 세미나 主題發表, (1977.9.23)
- 18) 李春熙. 韓國의 大学圖書館實態分析, 한국도서관협회, (1967)
- 19) 李喆珪. 「圖書館의 職制確立과 人事配置」, 延世대학교 圖書館學會誌; 創立十週年紀念論文集 v.3 (1967) pp.65~78.
- 20) 李根鉄. 「大学圖書館 改善을 위한 일연구」, 仁川教育大學論文集 v.7 (1973) pp.223~248.
- 21) 岩嶺敏生. 「アメリカの大学におけるAcademic Status の 問題」, 大学圖書館研究 v.1 (1972) pp.3~12.
- 22) 栗原嘉一郎外. 「米國大学圖書館의 藏書規模と設置狀況」, 大学圖書館研究 v.12. (1978.5) pp.42~49.
- 23) 圖書館白書 1979, 日本圖書館協會, (1979.4)
- 24) 圖書館關係法規基準集, 日本圖書館協會, (1962)
- 25) ドクメンテーション 핸드ブック, 日本圖書館協會, (1977)
- 26) 圖書館再建 50年: 1928~1978, 東京大學附屬圖書館, (1978)
- 27) 崔成真. 情報學原論, 亜細亞文化社, (1979)
- 28) 文教法典編纂會. 문교법전, 敎學社, (1978년판 및 1979년판)
- 29) Madan, Raj, Hetler, F., Strong, M., The Status of Librarians in Four-year State College and Universit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ep.1968) pp.381-386.  
崔貞泰訳. 「美國州立大學에 있어서 圖書館專門職員의 地位」, 文獻情報學研究, v.1.

- n.3 (1978.9) pp. 27~35
- 30) Down, Robert B., "Status of Academic Librarian in Retrospect" *The Case for Faculty Status for Academic Libraries*, A.L.A. (1970)
  - 31) Gelfand, M.A.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Paris: Unesco, 1971)
  - 32) Lyle, Guy R.,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4th ed New York: Wilson, 1974)
  - 33) Rogers, Rutherford D. and Weber, David C.,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New York: Wilson, 1971)
  - 34) Martin, Louis E., *The Librar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atement* (Washington, D.C.: May 1972)
  - 35) *ARL Statistics 1976~1977*,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 1977)

---

A Study on Development Policy of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Jung-tai Choe\*

( Abstract )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and investigate the versity libraries in Korea. Nineteen national col-present status of four-year national college and uni-leges and universities based on a number of faculty member, enrollment, department, library staff, volumes in library, academic journals, book budget and facili-ties of library, and so we have to improve and develop a kind of problems with which national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are confronted as follows:

- 1) Establishment of a position for the INFORMATION SPECIALIST.
- 2) Re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y.
- 3) Securing a position for the EDUCATIONAL RESEARCHER.
- 4) Upgrading a part of temporary employees.
- 5) Securing a self-control of library's administration.
- 6) Revising rules for labor employees in library.
- 7) Revising a STANDARD STATEMENT FOR ESTABLISHMENT OF UNIVERSITY. (Books and academic journals)
- 8) " ( Facilities of library )
- 9) Increase of a budget of library and establishing for an article of library budget.
- 10) Establishment of a new department exclusively responsible for library administration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 11) Giving a leading(proper) role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mong the other college and

---

\* Assistant Librarian,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libraries.

- 12) Establishment of The master course of INFORMATION SCIENCE or THE RESEARCH CENTER FOR INFORMATION SCIENC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